

대학원 생명과학과 운영 내규

1. 기존 학과 내규가 없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2. 아래 내용 중 빨간색 내용은 필수로 정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학과의 사정에 따라 달리하여 작성. 단, 석사학위 논문대체를 시행하는 학과에서는 제16조와 제17조를 필수로 정하여야 함
3. 기존 학과 내규가 있는 학과에서는 2번을 반영하여 작성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생명과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생명과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생명과학과 소속 교수들은 생명과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제5조 (과목개설) 생명과학과의 과목개설은 생명과학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학칙에 따라 개설한다.

제6조 (교·강사 배정) 생명과학과의 교·강사 배정은 생명과학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학칙에 따라 개설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생명과학과 대학원생의 지도교수 선정은 학기 시작 전후로 선정한다.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생명과학과 대학원생의 종합학력시험의 면제기준은 대학원 학칙을 포함, 다음과 같이 규정 한다.

1.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일 경우)시 면제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생명과학과의 시험 출제 및 채점은 해당학기에 해당 과목을 담당했던 교수님들이 맡으며, 출제 위원장은 해당학기 학과장이 담당한다.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이상이다.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생명과학과 대학원생의 외국어 시험 과목에 대한 규정은 대학원 학칙을 포함,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내국인의 경우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 교과목으로 정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시험 과목은 “영어” , “한국어” 로 정한다)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생명과학과의 석사 학위취득은 학위논문, 연구논문 (논문대체)로 규정하며, 학위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학위 취득 방법
논문	1. 33학점 이수 및 평균 80점 이상(전공 24학점, 연구지도 9학점) 2.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합격 3. 학위논문 작성 → 심사·통과
연구논문 (논문대체)	1. 39학점 이수 및 평균 80점 이상(전공 30학점, 연구지도 9학점) (추가 취득하는 전공 6학점은 지도교수의 과목 또는 지정하는 과목임) 2.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합격 3. 연구논문 작성 → 심사·통과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생명과학과의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생명과학과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에 대한 규정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제14조 (예비발표) 생명과학과 논문 예비발표에 대한 규정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제15조 (논문심사위원) 생명과학과 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및 인원에 대한 규정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제16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연구논문(논문대체) 심사는 학위논문과 동일한 규정으로 진행한다. 단, 석사 학위에만 해당 되며, 내부 전임교원 2인(지도교수 + 교내 전공 교수)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논문대체 제출) 연구보고서(논문대체) 심사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제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 해당 논문의 제본본과 국문 파일을 과사무실로 제출한다.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생명과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

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0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